|  |  |  |
| --- | --- | --- |
| **민정부《사회단체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통지**  민발[2012]16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청(국), 각 계획단열시민정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민정국 :  <사회단체 등기 관리조례>등 유관 법규 및 정책규정에 근거, 본 부는 <사회단체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바,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란다.  민정부  2012년 9월 27일  **사회단체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조** 사회단체의 행위 규범을 진일보 강화 및 사회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질서를 보호하고, 사회단체의 합작활동 전개의 규범화 및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사회단체를 독립법인으로 간주하여 기타 민사주체와 연합한 업무활동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유관 법률규정 및 정책규정을 준수하고, 정관에 규정된 목표와 업무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등기관리기관, 행정업무 주관부문, 유관 직능부문의 감독 검사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정관 규정과 합작프로젝트의 주요 정도에 따라 회원대회(회원대표대회), 이사회(상무이사회), 회장 주관회의 등에 각각 제기하여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서면으로 합작협의를 체결해야 하고, 각 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직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합작파트너의 자질, 능력, 신용 등을 평가해야 한다. 합작한 협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를 하고, 합작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  **제7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에서 본 조직의 명칭, 목표를 정하는 경우, 합작 전에 합작파트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합작내용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한다.  사회단체가 합작파트너가 정한 본 조직의 명칭, 목표에 동의하는 경우, 상대방과 수권사용협의를 체결하여 각 방의 권리, 의무 및 법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단체가 "주관단위", "협력단위", "지원단위", "참여단위", "지도단위" 등 방식으로 합작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유관 직책을 이행해야 하고, 활동의 전반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명목상 이름만 등록하는 방식으로는 합작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단체가 자체업무를 기타 조직에게 위탁하여 도급 및 협력 처리하는 경우, 전개하는 활동에 대한 주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도급업체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제8조** 사회단체는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경영서비스성 활동에 대하여 사회단체의 책임자, 분지기구 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게 하청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제9조** 사회단체 합작이 경제실체를 조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연구 토론을 거친 후 회원대회(회원대표대회)에 제정하여 가결되어야 하며, 그 경영범위는 사회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목표와 업무범위에 상응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자산, 기구, 인원 등 방면에서 경제실체와 분리해야 하며, 경제실체를 이용하여 회원 또는 서비스대상에게 강제적인 서비스 및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사회단체 및 경제실체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는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경제실체의 서비스현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회원대회(회원대표대회), 이사회에 유관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사회단체의 수권 또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회단체의 분지기구(대표기구), 전문기금 관리기구는 기타 민사주체와 합작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수권 또는 비준을 거친 후 합작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소속된 사회단체의 정식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그 분지기구(대표기구), 전문기금관리기구를 기타 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사회단체는 그 분지기구(대표기구), 전문기금관리기구로부터 관리비용을 수취하거나 우회적 방식을 통해 수취할 수 없다.  **제11조** 사회단체가 경외 조직 또는 개인과 합작하는 경우, 유관 법률과 외사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사회단체는 합작활동의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등 법률 법규 및 <민간 비영리조직 회계제도>등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결산을 진행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단위 법정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사회단체가 전개하는 합작활동은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정관에 규정된 목표 및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2) 어떠한 방식 또는 명의로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참가를 강요할 수 없으며, 유관 비용을 강제로 수취할 수 없다.  (3) 비준을 거치지 않고 평가도달 관련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4) 당정기관 또는 기타 조직관 합작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합작파트너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  (5) 당정기관의 지도간부 개인명의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4조** 사회단체가 연도검사를 받을 때 등기관리기관에 이전 연도에 진행된 합작활동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 **民政部关于印发《关于规范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若干问题的**  **规定》的通知**  民发〔2012〕166号  各省、自治区、直辖市民政厅（局），各计划单列市民政局，新疆生产建设兵团民政局：  　　根据《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等有关法规和政策规定，我部制定了《关于规范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若干问题的规定》，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民政部  2012年9月27日      **关于规范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  **若干问题的规定**  **第一条** 为了进一步加强社会团体行为规范，维护社会团体正常活动秩序，规范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保护社会团体合法权益，制定本规定。  **第二条** 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是指社会团体作为独立法人与其他民事主体联合开展业务活动的行为。  **第三条** 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应当遵守相关法律法规和政策规定，符合章程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自觉接受登记管理机关、行业主管部门、有关职能部门的监督检查和社会监督。  **第四条** 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应当履行内部民主议事程序，根据章程规定和合作事项重要程度，分别提交会员大会（会员代表大会）、理事会（常务理事会）、会长办公会等讨论决定。  **第五条** 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应当签订书面合作协议，明确各方权利、义务，并切实履行职责。  **第六条** 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应当对合作方的资质、能力、信用等进行甄别考察，对合作协议内容认真审核，对合作项目全程监督。  **第七条** 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涉及使用本组织名称、标志的，应当在合作前对合作方进行必要的调查了解，并对合作内容做好风险评估。  　　社会团体同意合作方使用本组织名称、标志的，应当与对方签订授权使用协议，明确各方权利、义务和法律责任。  　　社会团体以“主办单位”“协办单位”“支持单位”“参与单位”“指导单位”等方式开展合作活动的，应当切实履行相关职责，加强对活动全程监管，不得以挂名方式参与合作。  　　社会团体将自身业务活动委托其他组织承办或者协办的，应当加强对所开展活动的主导和监督，不得向承办方或者协办方以任何形式收取费用。  **第八条** 社会团体不得将自身开展的经营服务性活动转包或者委托与社会团体负责人、分支机构负责人有直接利益关系的个人或者组织实施。  **第九条** 社会团体合作举办经济实体，应当经理事会研究讨论后提请会员大会（会员代表大会）表决通过，其经营范围应当与社会团体章程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相适应。  　　社会团体应当在资产、机构、人员等方面与所举办经济实体分开，不得利用所举办经济实体向会员或者服务对象强制服务、强制收费。  　　社会团体和所举办经济实体之间发生经济往来，应当按照等价交换的原则收取价款、支付费用。  　　社会团体应当加强对所举办经济实体财务情况的监督，并定期向会员大会（会员代表大会）、理事会报告相关情况。  **第十条** 未经社会团体授权或者批准，社会团体分支机构（代表机构）、专项基金管理机构不得与其他民事主体开展合作活动。经授权或者批准开展合作活动的，应当使用冠有所属社会团体名称的规范全称。  　　社会团体不得将其分支机构（代表机构）、专项基金管理机构委托其他组织运营。  　　社会团体不得向其分支机构（代表机构）、专项基金管理机构收取或者变相收取管理费用。  **第十一条** 社会团体与境外组织或者个人进行合作，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和外事管理规定。  **第十二条** 社会团体应当加强合作活动的财务管理，严格按照《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等法律法规以及《民间非营利组织会计制度》等规定，如实进行会计核算，将全部收支纳入单位法定账册。  **第十三条** 社会团体开展合作活动，还应当遵守以下规定：  　　（一）不得超出章程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开展活动；  　　（二）不得以任何形式或者名义强制其他组织或者个人参加，不得强制收取相关费用；  　　（三）未经批准，不得举办评比达标表彰活动；  　　（四）与党政机关或者其他组织举办合作项目，应当事先征得合作方同意；  　　（五）利用党政机关领导干部个人名义进行宣传，应当征得本人同意。  **第十四条** 社会团体在接受年度检查时，应当向登记管理机关报告上一年度开展合作活动的情况。 |